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1/12/8 통권 1548호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같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결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영종 회계사:

코로나 시대 거래처 외상 수금이 지연되면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부실화된 외화매출채권은 외국환은행의 채권회수 면제시점에 대손처리함
-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경영권 이전 프리미엄 대가 포함금액은 임직원 주식매수권 행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p.13)

CEO·CFO·COO · 회계책임자· 조세전문가·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지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같은 재산 평가액인데도 종부세가 들쭉날쭉 다른 이유 비교>

가정 : 시세는 25억원 → 공시시가는 17억원인 경우 (63세+7년 보유중)

개념, 구분	① 1채 단독명의	② 1채 부부공동	③ 별도2채 각 단독	④ 별도 2채 공동 (11억+6억)
판단	1세대 1주택	1인당 1주택 (합 2주택)	1인 1주택	1인 2주택씩
공시가	17억원	17억원	17억원	17억원
기본공제	11억원	6억 × 2 = 12억원	6억 × 2 = 12억원	6억 × 2 = 12억원
과세금액	6억	2.5+2.5억	5억+0	5억+0
평가율	95%	95%	95%	95%
과세표준	5.7억	2.375억 + 2.375억	4.75억	4.75억
세율, 세액	3억까지 × 0.6% + 2.7억 × 0.8% = 396만원	2.375억 × 0.6% × 2인 = 28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채는 6-6 = 0 (세금 없음) · 다른 1채 → 각 1주택 세율 3억 × 0.6% + 1.75억 × 0.8% = 3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채 : 6억 - 6억 = 세금없음 · 다른 1채 = 각 2주택세율(2배) 3억 × 1.2% + 1.75억 × 1.6% = 640만원
공제할 재산세	100만원 가정	100만원 가정	100만원	100만원 가정
세액공제 (노령+장기)	118.4만원 (20+20%)	적용안됨 (2주택)	적용안됨 (2주택)	적용안됨 (2주택)
납부할 세액	177.6만원	185만원 (왼쪽 ①선택 가능)	220만원	540만원

※상기 모두 농특세 20%가 추가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48호 / 주간 49호

2021. 12. 8.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같은 자산 평가액인데도 증부세가 들쭉날쭉 다른 이유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코로나 시대 거래처 외상 수금이 지연되면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2
C E O 에 세 이	CEO꿈은...?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일용근로자의 귀향여비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지 여부? - 수출 클레임 관련 문의 - 임대매출 공제 건 관련 문의입니다 - 회원권 평가 시 시세반영 여부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부실화된 외화매출채권은 외국환은행의 채권회수면제시점에 대손처리함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 한도 증액 -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10 11
직 장 인 Survival	적극적 YES와 적극적 NO를 외쳐라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법령법인-147, 2021.05.25) -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법령소득-805, 2021.02.18)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중고단체 등 공익법인, 신청만 하면 증부세 특례 적용 '15일까지'	15
마 케 팅 Tax consulting	경영권 이전 프리미엄 대가 포함금액은 임직원 주식매수권 행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13
세 무 정 보	-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16 40
경 영 정 보	-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코로나 시대 거래처 외상 수금이 지연되면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구분	부도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부도매출채권부가세의 대손세액공제
세금영향	비용(손금)인정으로 법인세율 22% 덜 냄	공급가액×10%의 부가세 차감 환급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9조의2 (채무자 파산, 소멸시효,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의 회수불능금액)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로 회수불 능시 매출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함)
대손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1. 상법소멸시효 5년 2. 어음 3. 수표법 소멸시효 4.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 5. 회생파산법 6. 채무자 경매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 른 대손금: 상법, 민법 소멸시효 → 공급일(매출채권일)부터 3년 ② 대손처리일(3년, 5년) 지나면 공 급일부터 만 10년 되는 때에 대손 세액 적용함 ③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면, 매입자 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추징함

대손사유	9. 부도발생 6개월 된 어음, 수표 9의2. 중소기업 매출채권 2년된 경우 10. 재판상 화해 회수불능채권 11. 6개월 된 소액채권(30만원 이하)	
세무신고	대손금으로 영업외비용 반영하면서 손금산입함	부가세 신고서 상에 대손세액공제 신고함
회계처리	(차) 대손금 100 (대) 매출채권 100	(차) 대손금 10 (대) 매출채권 10 (부가세)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26일 (금)	11월 29일 (월)	11월 30일 (화)	12월 1일 (수)	12월 2일 (목)
미 달 러 (USD)	1189.70	1193.00	1193.40	1187.70	1180.30
일 본 엔 (JPY)	1031.79	1049.53	1049.56	1049.16	1045.81
캐 나 다 달 러 (CAD)	940.33	936.27	936.81	929.49	921.32
홍 콩 달 러 (HKD)	152.59	152.98	153.01	152.32	151.46
위 안 화 (CNH)	186.14	186.64	186.80	186.26	185.10
유 로 화 (EUR)	1333.53	1347.14	1349.59	1346.79	1336.22
호 주 달 러 (AUD)	855.10	851.15	852.45	846.53	838.96
싱 가 폴 달 러 (SGD)	869.44	870.77	871.89	870.49	864.7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1.29	281.43	281.56	282.62	279.69

CEO감은...?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CEO감은? 즉 CEO의 자질은 무엇인가? 수많은 자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또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강조되는 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력(知力, 냉철한 머리), 심력(心力, 따뜻한 가슴), 그리고 체력(體力, 왕성한 추진력)을 CEO의 중요 자질로 꼽는 데에는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요즘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같은 CEO의 자질론이 재치있다.

쌍기역(ㄷ)자로 된 일곱 글자다.

꿈, 끈, 피, 깡, 끼, 끈, 풀이 그것이다.

첫째, ‘꿈’이 있어야 한다.

즉 비전을 창출,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것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잭 웰치가 이끄는 GE는 과거보다 미래에 역점을 두면서 성공해 왔다. 그들은 미래를 지향하고 창조해 냈다.

루치아나 베네통,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콘라드 힐튼, 모리타 아키오, 앤디 그로브 그리고 월트 디즈니 등 위대한 CEO들은 꿈을 현실로 가꾸어 냈다.

둘째, ‘끈’이다. 일꾼, 장사꾼이어야 한다.

수레를 끌고 가는 땀의 화신이다.

선동 경영을 일삼는 사기꾼이 아니다. 또 말로 인기인이 되는 ‘말꾼’도 아니다. 주가지수 몇 천이 될거라며 아줌마들을 호리던 H그룹의 L회장 같아서 안된다.

셋째, ‘피’가 넘쳐야 한다. 냉철한 머리의 전략가여야 한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과 환경 속에서도 기업과 사회를 동시에 풍요롭게 해야 한다. 말하자면 현명해야 한다.

머슴이나 가신처럼 오너의 비위나 맞추는 잔피는 결국 기업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넷째, ‘깡’이 있어야 한다.

배짱, 도전,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또 압력에 'No'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에 정통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만용일 뿐이다. '역발상'으로 자동차값을 절대 깎아주지 않는 전략도 이른바 프로마케팅의 '깡'이다.

IMF를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은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Positive Mind'도 무게있는 자신감이다.

사업성 없는 문어발을 도려내고 부서간 벽을 허물었던 '중성자탄' 잭 웰치의 깡도 볼 만하다.

다섯째, '끼'가 넘쳐야 한다. 일을 사랑하면서도 휴식을 아는 멋. 자칫 날라리들 매미처럼 놀기만 잘하는 '끼'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인기영합주의인 '표플리즘'에 빠져서는 안된다.

자동차 안에서 테이프를 틀면서 유행가를 배우려던 왕회장의 처절함은 차라리 처량하기까지하다. 자신만의 개성과 취미, 넉넉한 유머, 솔직성 등 인간적 매력이 바로 '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끈'이 있어야 한다.

소위 오너와 닿는 끈을 비아냥거리며 꼬집은 말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치사한 노릇이다. 실은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고객과의 끈, 종업원과의 끈, 사회와의 유대가 중요하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결국 고객과 사회와의 끈이 굳건해야 주주와의 끈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꼴'이 좋아야 한다. "보기좋은 떡이 맛도 있다"는 속담같이 모양새가 좋아야 한다. 옛말에도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했다.

처신과 행태가 CEO다워야 한다. 오너 앞에서 출랑대는 방자나 경망스러운 돈키호테는 곤란하다. 느낌보 곰 같아서도 참기 힘들다. 왕회장 같은 독재자처럼 난폭해서도 뒤끝이 좋을 리 없다.

술먹고 해롱대거나 여자 문제로 군소리가 많은 게 덕될 리 없다. 스마트(Smart)해야 한다.

잠깐, 필자가 꼭 덧붙일 게 있다.

끝으로 '끝'이 좋아야 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속담이 있다. 셰익스피어도 "명배우는 퇴장할 때를 안다"고 했다.

CEO는 떠날 때를 대비하여 훌륭한 후임자를 육성하고 발굴해야 한다. 10년이상 후임자 양성에 애써온 잭 웰치의 은퇴도 타산지석이다.

퇴장 시기와 후임자 문제에 질척거리는 경우가 흔한 한국기업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용근로자의 귀향여비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Q 당사 3개월 단기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명절 귀향여비를 9월에 25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5만원에 대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보고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해야 하나요?
이 근무자는 11월 급여에 대해서 12월에 지급된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일용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출 클레임 관련 문의

Q 당사는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합니다.
수출분 클레임에 대하여 매월 확정처리하고 반제처리를 연1회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금회수가 지연될 경우 대손충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금지급이 1년안에 정리되지 않을 시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클레임 회수일정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A 매입채무를 1년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내 세법상의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즉, 국내세법에서는 매입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대금 정리는 거래 당사자간 결정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임대매출 공제 건 관련 문의입니다

Q 당사는 임대매출 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임차 회사인 A회사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당사가 아닌 임차 회사 A로 되어 있습니다.
위 건을 임대 매출 금액에서 차감하려고 하는데 임대 매출 차감 금액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입니다.
공급가액 : 800,000원 부가세액 : 80,000원 일 경우 당사는 임대 매출 차감 금액에 공급가와 부가세는 얼마로 차감해야 하는지요?

A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공급받는 자가 귀사가 아닌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귀사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귀사가 부담하는 귀사의 비용인데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공급자에게 귀사를 공급받는자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원권 평가 시 시세반영 여부

Q 콘도 회원권의 무형자산 평가 시 회원권거래소 2곳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 2곳의 시세가 각각 다를 경우 평가에 적용하는 시세는 2곳의 평균값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높은 시세를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A 어떤 목적으로 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시가로 거래하도록 규정하면서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금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실화된 외화매출채권은 외국환은행의 채권회수면제시점에 대손처리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수출과 수입에 한정되었던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가 직접·간접투자 등으로 그 형태가 한층 다양화되고 빈도수도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과의 거래의 증가는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화채권의 부실화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큰 틀에서 보면 외국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화부실채권도 국내에서 발생된 부실채권과 동일하게 세무처리하면 되는데, 외화부실채권의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외화채권도 국내발생 채권과 똑같이 대손반영함

현행 법인세법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열거규정 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대손처리 및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화채권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없으므로 외화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수출대금·해외대여금 등의 외화채권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등과 같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회수불능 상태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반영하면 된다.

보통 미수관련 소멸시효인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한다. 국세청에서는 해외매출채권도 국내채권과 동일하게 대손처리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관련예규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세과-698, 2009.0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해외 현지법원에 의한 청산절차의 종결시 대손처리 가능

외화 매출채권도 국내에서 발생된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지만, 채무를 지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자국에서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즉, 해외의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까지 기다렸다가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해외 공관장의 회수불능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해당 회사에서 해외 채무법인의 부도 도주 행방불명 또는 못받을만한 불가항력적 사실을 조사한 뒤 해외 현지 한국영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 법인46012 - 1694, 1998. 6. 24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청산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 및 보증채무대위변제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지법인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회수 면제 승인받은 경우도 대손처리 가능

해외 현지의 채무법인의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와 더불어,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해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 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 받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수출대금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채권회수면제 신청을 하고 그 사유가 적절하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면제승인을 받으면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바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 법인46012 - 3119, 97. 12. 3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현재는 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임)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세법

■ 증부세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공제한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종전	개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 →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세화

■ 증부세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전	개정		종전	개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주택취득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 취득: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증여, 원시취득인 신축·증축 등을 모두 포함 																																		
납부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대상자가 됨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세 율	<표준세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취득세</th> <th>지방교육세</th> <th>농어촌특별세</th> </tr> </thead> <tbody> <tr> <td>6억 이하</td> <td>1.0%</td> <td>0.1%</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초과시 0.2% 과세</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6억 초과 9억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5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1.33%</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0.1~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1.6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5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2.3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5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2.6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억</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9억 초과</td> <td>3.0%</td> <td>0.3%</td> <td></td> </tr> <tr> <td>원시취득(신축), 상속*</td> <td>2.8%</td> <td>0.16%</td> <td>0.2%</td> </tr> <tr> <td>무상취득(증여)</td> <td>3.5%</td> <td>0.3%</td> <td>0.2%</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	0.1%	전용면적 85㎡초과시 0.2% 과세	6억 초과 9억 이하	6.5억	1.33%	0.1~0.3%	7억	1.67%	7.5억	2.0%	8억	2.33%	8.5억	2.67%	9억	3.0%	9억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	0.1%	전용면적 85㎡초과시 0.2% 과세																															
	6억 초과 9억 이하	6.5억	1.33%		0.1~0.3%																														
		7억	1.67%																																
		7.5억	2.0%																																
		8억	2.33%																																
		8.5억	2.67%																																
	9억	3.0%																																	
9억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다주택자·법인 등 종과세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취득세</th> <th colspan="4">유상취득</th> <th rowspan="2">무상취득 (3억 이상)</th> </tr> <tr> <th>1주택</th> <th>2주택</th> <th>3주택</th> <th>4주택~ 법인</th> </tr> </thead> <tbody> <tr> <td>조정지역</td> <td>1~3%</td> <td>8%</td> <td>12%</td> <td>12%</td> <td>12%</td> </tr> <tr> <td>新조정지역</td> <td>1~3%</td> <td>1~3%</td> <td>8%</td> <td>12%</td> <td>3.5%</td> </tr> </tbody> </table>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 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법인	조정지역	1~3%	8%	12%	12%	12%	新조정지역	1~3%	1~3%	8%	12%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세: 종과분(8% 및 12%) 모두 0.4% * 농어촌특별세: 8% 종과분 0.6%, 12% 종과분 1%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 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법인																															
조정지역	1~3%	8%	12%	12%	12%																														
新조정지역	1~3%	1~3%	8%	12%	3.5%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1.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취득가액 1.5억원 이하시 면제하고, 1.5억원 초과시 50% 경감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등 																																		



적극적 YES와 적극적 NO를 외쳐라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스트레스는 스스로 자각하고 벗어나려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관찰해 이상이 있다면, 우선 일을 멈추고 지금의 나의 모습, 나의 본질적 가치,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휴식을 취하라

가능하면 활동의 중심에서 벗어나 평온함 속에 기쁨을 느끼는 휴식을 누리게 좋습니다. 아무 성과 없이 멈춰 있는 것에 조바심이 날 수 있지만, 그동안 모든 것을 움켜쥐려 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놓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때를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지요.

적극적 YES와 적극적 NO를 외쳐라

그리스 시인 카바피스가 말한 것처럼 '적극적 yes와 적극적 no를 말하되, 자신의 의지를 담아라.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단호한 no를, 자신의 건강, 자유, 미래의 길에는 적극적 yes를 외쳐라.'

진실된 삶을 살라

자신을 속이며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것 같습니다. 어떤 방해에 구애받지 않고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실된 삶이며, 진실로 자기 자신일 때 가장 만족스럽고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라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원칙은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자아를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일은 하고, 해가 되는 일은 피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때 인생에 대해 느낌이 달라지며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동반자를 찾아라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모를 때 나를 내보이고 신뢰하며 기댈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며 격려해 줄 마음의 동반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랑을 불어 넣는 가운데 놀랍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경영권 이전 프리미엄 대가 포함금액은 임직원 주식 매수권 행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법령법인-147, 2021.05.25

질 의

-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330, 2021.05.18

질 의

- 합병당사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였으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이후,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피합병법인에게 교부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평가할 경우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갑설) 합병법인의 합병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상속세및증여세법 § 63) (을설) $\{(\text{합병전 합병법인 주식가액} + \text{피합병법인 주식가액}) / \text{합병 후 주식수}\}$ 로 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 § 38)

회 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던 합병법인이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법령소득-805, 2021.02.18

■ 질 의

- 질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을 발급하면서,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충전하면 질의인이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이를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가 포함됨

법인세제과-143, 2021.03.08

■ 질 의

- A법인은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웨이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월 전력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이하 "Sic Wafer") 제조기술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美 ◎◎社의 자회사로부터

- Sic Wafer 생산과 관련한 기계장치 및 특허권 등을 포함한 사업부를 00억 달러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A법인은 '19.10월 Sic Wafer 사업부 양수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 ① Sic Wafer 현지 운영 및 사업확장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內 사업관리 법인인 A법인의 자회사와

- ②Sic Wafer 생산·판매 사업운영 법인인 A법인의 손자회사를 설립한 후 '20.**.**. A법인의 손자회사가 Sic Wafer 사업부를 양수함으로써 사업양수도 거래를 완료하였음

질의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을설) 완전 손자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신청만 하면 종부세 특례 적용 '15일까지'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오는 15일까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지원하는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개인과 동일한 세율,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법인 일반세율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선 9월에 2주간 신청서를 받았으며, 그 때 신청하지 못한 곳은 이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세무서에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해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 신고없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서는 세무서 직접 제출 외에도 홈택스나 우편, 팩스 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각 지역별 간담회, 개별 안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10년까지 연장... 2023년부터 물납 허용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해외에선 미국·영국·독일 등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했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문화계는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면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와 함께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으로 상향...내달 시행

1가구(기존의 "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도 1년 유예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부터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주택 매도인에 대해 확대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2억원 초과 집을 파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국세청, 2021. 1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정부가 '21.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 소득세법 >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 22.1.1. → (개정) ' 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7일 이내 → 10일 이내,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24.12.31.)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현행) 20%→ (개정)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20%)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적용 제외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실지거래가액 9억원 → (개정) 12억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행* 유지
* (상용근로소득) 반기 1회 등

< 법인세법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개정)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현행) 15억원 → (개정) 20억원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현행) 최대 5년 → (개정) 최대 10년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

-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7.28)'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 증권거래세법 >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
 - *에 ‘투자자 분류 정보’ 를 추가
 -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월일, 양도자 계좌번호

< 관세법 >

-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품(TCA*품목)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
 - *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 TCA: (‘22)80% (‘23)60%, (‘24)40%, (‘25)20% → (‘25)80% (‘26)60%, (‘27)40%, (‘28)20%

< 조세특례제한법 >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
 - * 비과세 한도 : (현행) 3천만원 → (개정) 5천만원
 -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 부과
- 기업간 협업 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 * (현행) 벤처기업 등 → (개정) 창업후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 관계를 감안하여 일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조정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 (현행) 2,400만원 → (개정) 2,600만원
 - 농어민·서민형 ISA : (현행) 3,500만원 → (개정) 3,800만원
 - 청년형 장기펀드 : (정부안) 3,500만원 → (수정) 3,800만원
 - 청년희망적금 : (정부안) 2,400만원 → (수정) 2,600만원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 * (정부안)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소득 → (수정)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소득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보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 (정부안) '22.6.30. → (수정) '22.12.31.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 공제) 신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1인당 연간 한도 500만원)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미환류소득)에 추가 과세
 - ** (현행) 1년 → (개정) 2년
 - ※ '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현행) '21.12.31. → (개정) '23.12.31.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 포함
 - * 운동경기부 설치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추가
-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 (현행) 국내 발생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 (개정) 국내·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적용
-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 (정부안)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위기지역은 일몰 연장) (수정) 위기지역·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 (정부안) '21.12.31. → (수정) '23.12.31.



< 국세징수법 >

-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소재·거주사실 보유관리자를 추가하는 제도 도입 보류

< 관세사법 >

-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첨 - 정부안 대비 수정내용 상세본

1. 국세기본법

- ①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범위확대 보류(국기법 §69)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법한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청구서 제출기관에 다음 기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장 ○ 지방자치단체장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조정(국기법 §84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원 	<input type="checkbox"/>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억원

< 수정이유 >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초자료 제공대상자에 국회의원 추가(국기법 §85의6⑦)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통계자료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input type="checkbox"/> 정부출연기관장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기초자료의 제공대상자 국회의원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국회의원

< 수정이유 > 국세통계 제공 대상 확대

< 시행시기 > ' 22.1.1. 이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소득법 §21·법인법 §93 등)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기타소득 <input type="checkbox"/>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과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유예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22.1.1. → '23.1.1.

< 수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23.1.1.) 고려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소득법 §81의9②, 법인세법 §75의6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산세) 미발급금액 x 20%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u>7일</u> 이내 자진신고 · 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u>10일</u>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 수정이유 >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소득세법 §150)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적용기한) '24. 12. 31.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방지 등 과세형평 제고

④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59의4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추 가> ○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좌 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u>30%</u> - <u>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u>

7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소득법 §56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 (공제한도·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 (공제방식) 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2. 7. 1. ~ '24. 12. 31.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입법 ○ (좌 등)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 (좌 등) ○ (좌 등)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8-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소득법 §164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의무 없음 →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①19호)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 유지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8-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적용 보류(소득법 §164)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신설 ○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⑧-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현행 유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맞춰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변경 ○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제출기간 경과 1개월 내 제출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현행 유지 ○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⑧-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현행 유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특례 신설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적용대상) '22.7.1~'23.6.30.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특례내용)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삭 제>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추가 ○ 적용대상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추가) 상용근로소득 - (추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특례내용) 간이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 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적용대 상 현행 유지 ○ (적용대상) - (좌 동)] <삭 제>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⑧-5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적용 보류(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신설 ○ 적용대상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적용방법 -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 세서(가산세율: 0.25%) 가산세 모두 적 용 시 높은 가산세율(가산세율: 1%)만 적용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법인세법

① 50% 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추가(법인법 §2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50%한도 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명 위문금품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 가액 등 ○ 다음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 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0;"> (좌 동) </div>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 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u>한국에너 지공과대학교</u>

< 수정이유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반영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상증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가액을 공제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수정이유 >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가액을 공제 ○ 15억원	<input type="checkbox"/>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20억원

< 수정이유 >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③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부연납 허용 기간 ○ 증여세 : 5년 ○ 상속세 ① 가업상속재산 - 비중 50% 미만: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 비중 50% 이상: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② 일반 상속재산 : 5년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좌 동) ② 일반 상속재산 : 10년

< 수정이유 >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시기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④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상증법 §73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신 설> ※ (현행) 상증법§73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 허용</p>	<p><input type="checkbox"/>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체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 다만,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 제외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하여 물납 신청 허용 <p>※ 물납 신청,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p>

< 수정이유 >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①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부가법 §7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액 × 21% 	<p><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율 연차적으로 인상 (+4.3%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21.0% → 23.7% (+2.7%p) ○ ('23년~) 23.7% → 25.3% (+1.6%p)

< 수정이유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7.28)' 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

< 시행시기 > ' 22.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 (공제한도·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2.7.1. ~ '24.12.31. 	<p><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삭 제>
(현 행) - 다음의 경우 발급 ■ 수입자의 착오 및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개정안) -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급 ■ 관세법 상 벌칙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증권거래세법

①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상향입법 및 확대(증권거래세법 §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 ○ (요건) 증권시장에서 증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 (기한) 매매일 다음 날까지 ○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시행령*으로 규정 *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통지사항 상향입법 및 추가 ○ (좌 동) ○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u>투자자 분류 정보</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정이유 > 과세 인프라 구축

< 시행시기 > ' 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7. 관세법

①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간 연장(관세법 §89⑥)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서울불균형 물품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율 - TCA(민간항공기협정)품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1년</td><td>22년</td><td>23년</td><td>24년</td><td>25년</td> </tr> <tr> <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 </tr> </table>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177개 품목 - 그 외 품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1년</td><td>22년</td><td>23년</td><td>24년</td><td>25년</td> </tr> <tr> <td>70%</td><td>60%</td><td>50%</td><td>40%</td><td>20%</td> </tr> </table>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00%	80%	60%	40%	20%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70%	60%	50%	40%	20%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 연장(3년)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율 - TCA(민간항공기협정) 품목: 3년 연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2~24년</td><td>25년</td><td>26년</td><td>27년</td><td>28년</td> </tr> <tr> <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 </tr> </table> - 그 외 품목: 현행유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1년</td><td>22년</td><td>23년</td><td>24년</td><td>25년</td> </tr> <tr> <td>70%</td><td>60%</td><td>50%</td><td>40%</td><td>20%</td> </tr> </table>	22~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100%	80%	60%	40%	20%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70%	60%	50%	40%	20%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00%	80%	60%	40%	20%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70%	60%	50%	40%	20%																																					
22~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100%	80%	60%	40%	20%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70%	60%	50%	40%	20%																																					

< 수정이유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

< 시행시기 > '22.1.1. 이후 시행

②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보류(관세법 §1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input type="checkbox"/>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신청인의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일 것 -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input type="checkbox"/> 국선대리인 자격 : 변호사, 관세사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③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 조사 권한 근거 마련(관세법 §227③)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의무 이행의 요구 ○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문서로써 의무 이행 요구 가능 ○ 의무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 이행 <추 가>	<input type="checkbox"/> 조사 권한 근거 신설 ○ (좌 동) ○ 세관 공무원에게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권한 부여

< 수정이유 > 업무 집행의 실효성 확보

< 시행시기 > '22.1.1. 이후 시행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혜택 범위 확대(관세법 §255의3)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위험관리를 통한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우수업체의 혜택 ○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input type="checkbox"/> 혜택 범위 확대 ○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

< 수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8. 조세특례제한법

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1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 한도 : 3천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확대 ○ 한도 : 5천만원

< 수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 (조특법 §16의4)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 시가 이하 발행 제외 ○ (특례내용)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특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수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시행시기 > '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대상 확대 관련 개정 규정은 ' 21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22년말)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input type="checkbox"/> 특례 적용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 3년

< 수정이유 > 과세특례 적정화

④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46의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특례내용)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시,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 ‘벤처기업등’의 범위 - 벤처기업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대상 확대 ○ (좌 동) ○ ‘벤처기업등’의 범위] -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

< 수정이유 > 전략적 제휴 활성화

< 시행시기 > ’ 22.1.1.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조특법 §87③)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 2,4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수정이유 > 청년 지원

< 시행시기 > ’ 22.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⑥ 농어민·서민형 ISA 소득요건 조정(조특법 §91의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민·서민형 ISA* 소득요건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농어민·서민형) 400만원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수정이유 > 농어민·서민 지원

< 시행시기 > ’ 22.1.1. 이후 가입·연장 분부터 적용



7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보류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 분리과세 ○ (대상) 거주자*가 「국채법」 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한 이자소득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특례) 9% 분리과세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 ○ (적용기한) '24. 12. 31. 까지 매입분	<삭 제>

< 수정이유 > 「국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8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 조정(조특법 §91의20)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소득기준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배제 사유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배제 ·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 수정이유 > 청년 지원

< 시행시기 > ' 22.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조특법 §91의21)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수정이유 > 청년 지원

< 시행시기 > ' 22.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96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6개월 연장 <input type="checkbox"/>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20. 1. 1. ~ '22. 6. 3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좌 동) <input type="checkbox"/> '20. 1. 1. ~ '22. 12. 31.

< 수정이유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5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 수정이유 > 기부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 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 협력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2. 12. 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 수정이유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 시행시기 > '22.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13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38의2)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input type="checkbox"/> (~'21.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input type="checkbox"/> ('22.1.1.~'24.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23.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input type="checkbox"/> ('24.1.1.~'26.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조특법 §100의32)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input type="checkbox"/>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input type="checkbox"/>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input type="checkbox"/> ①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input type="checkbox"/> ②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input type="checkbox"/>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input type="checkbox"/>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2년 <input type="checkbox"/>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1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좌 동) <input type="checkbox"/>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1년 → 2년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개정이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15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 104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 (지원내용)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개 종목 ○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 (적용기한 신설) '24. 12. 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 (좌 등) ○ 이스포츠경기부 추가 <삭 제>

< 수정이유 > 게임산업 육성 및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1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조특법 § 25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22. 12. 31.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공제대상)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좌 등) ○ (좌 등)

< 수정이유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 시행시기 > ' 22.1.1.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

17 제주도·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 112·§ 121의1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지역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감면율 75%(12,000원 → 3,000원) ○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감면율) 75%(12,000원 → 3,000원) - (적용기한) '23. 12. 31.	<input type="checkbox"/>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좌 등) ○ 감면 적용기한 종료

< 수정이유 > 골프장 내장객 수 확대 등 조세특례 목적 달성

18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21의23⑩, § 121의 25⑧)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 (농협) -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 ○ (수협) -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 조합·중앙회에 공급 ○ (적용기한) '21. 12. 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좌 동) ○ '23. 12. 31.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9. 국세징수법

1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의 대상자 현행 유지(국징법 § 36)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강제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 ① 체납자 ②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③ 체납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④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사원 ⑤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공동주택 관리인 등 체납자의 소재·거주사실을 파악·관리하는 자(신설)	<input type="checkbox"/> 질문·검사 대상 현행 유지 (좌 동)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0. 관세사법

1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 금지(관세사법 § 3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통관업무 관련 금지행위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추 가> <input type="checkbox"/>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input type="checkbox"/> 금지행위 추가 ○ (좌 동) ○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수정이유 > 통관업무 관련 시장질서 제고

② 시험 방해행위 등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관세사법 §6의3②, §29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해당 시험 정지·무효 및 처분일부 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제재 강화 ○ (좌 동) ○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정이유 >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시행시기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1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①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일부 보류(주류면허법 §7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류의 통신판매 정의* 추가 *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 규정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주류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 등 근거 마련 ※ 현재 국제성 고시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를 규정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심의결과 반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 국세청, 2021. 11

-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 개정('21. 11. 9.)
 -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20. 1. 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21. 6. 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 1. 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생 사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 ①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한 사례
 - ② 외국인 발길이 뜸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을 실천한 사례
 - ③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를 전액 인하한 사례
 - ④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례 등

- (유의 사항)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6조의3 제3항) 개정('21. 11. 9.)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령 개정 전에는 '20. 1. 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 수 있었으나,
- 임차인이 '21. 6. 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여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여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 1. 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 세법령 개정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의3)

(‘21. 11. 9.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차인 요건 완화	'20. 1. 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21. 6. 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 대상 확대	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 적용대상: '21. 1. 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2 상생 사례

- 국제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사례 ①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 분담
<p>◆ ○○시 소재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은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억 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천만 원 중 80%를 인하여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p>	

사례 ②	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 실천
<p>◆ 명동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은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에 처하자, '20년 2월에 임대료의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등 ○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였습니다.</p>	

사례 ③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전액 인하
<p>◆ ○○○는 본인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차인 △△△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19년 6월 개업(한식점) 후 바로 위기에 처하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천만 원 전액을 인하하였습니다.</p>	

사례 ④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 변제
<p>◆ ○○○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는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 운영 임차인에게 ○백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 변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p>	

사례 ⑤	소상공인 밀집 상가 임차인 200여 명과 상생 도모
<p>◆ 남대문시장에서 액세서리 종합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방문객이 급감하여 임차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200여 명의 임차인들에게 ○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p>	

사례 ⑥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 고액 인하
<p>◆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서 수십 년 간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 외 11명은,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여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액세서리, 공예품, 한과, 기타 잡화 등의 소매 임차인 8명에게 ○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p>	

사례 ⑦	102세 고령의 임대사업자 상생 분위기 확산에 동참
<p>◆ ○○○시에서 수십 년 간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 옹은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도 코로나19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매잡화점, 분식 음식점 등의 임차인에게 ○백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p>	

○ 위 사례 외에도 많은 상가임대인의 상생 사례가 있었으며, 임차인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주셨습니다.

3 신고 편의 제공

-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마련*하여(붙임 2) 누리집에 게시
①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됨

▣ 임대인 제출 서류 ▣

-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 ② 확정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 ③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 (☎ 국번없이 1357)
-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도 누리집에 게시②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①참고자료실, ②세액공제 계산

4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2항)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구분	내용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96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96의3
공제기간	· '20. 1. 1. ~ '21. 12. 31. 까지 * 기재부 「'21년 세법개정안」('21. 7. 26. 발표): '22. 6. 30. 까지(6개월 연장)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
임대인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 요건 (임차 소상공인*)	※ 다음 각 호(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1. 6. 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기존) '20. 1. 31. 이전부터... → (개정) '21. 6. 30. 이전부터... ('21. 1. 1.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인하분은 50%, '21년 인하분은 70% [기준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 원 초과자 50%]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보증금을 인하 직전 보다 인상(갱신 등의 경우에는 5% 초과)한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공제배제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붙임 2 - '20년 귀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고 현황

□ 상가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명, 개, 억 원)

임대인 합계				당해연도 공제세액		이월 공제세액2)	
구분	인원1)	인하액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합계	103,956	4,734	2,367	96,790	1,661	32,793	706
개인	99,372	4,022	2,011	93,117	1,439	31,251	572
법인	4,584	712	356	3,673	222	1,542	134

1) 임대료 인하 받은 임차인은 180,910명 (개인 169,733명, 법인 11,177개)

2) 공제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간 이월공제 가능

□ 지역별 임대료 인하 받은 임차인 현황

(명, 개)

구분	합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합계	180,910	169,733	11,177
서울특별시	60,137	55,034	5,103
경기도	47,514	44,808	2,706
부산광역시	12,230	11,601	629
대구광역시	11,592	11,061	531
인천광역시	9,858	9,311	547
경상남도	5,624	5,403	221
경상북도	5,612	5,399	213
충청남도	4,970	4,779	191
대전광역시	4,094	3,862	232
충청북도	3,989	3,827	162
광주광역시	3,805	3,611	194
울산광역시	3,172	3,067	105
강원도	2,577	2,488	89
전라북도	2,350	2,247	103
전라남도	1,777	1,720	57
세종특별자치시	1,036	980	56
제주특별자치도	573	535	38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 중소벤처기업부, 2021. 12

- 중기부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발표, 인식 제고부터 단계적 지원 -

- ① (중소기업의 ESG 인식제고) 중소기업이 ESG 자가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ESG 체크리스트 마련, 교육·컨설팅 집중지원 및 사례집 발간
 - ② (중소기업 유형별 생태계 조성) 대기업 협력사 ESG 지원 촉진, ESG 자상한기업 추가 발굴, 수출·탄소중립 등 부문별 맞춤형 지원
 - ③ (거버넌스 구축) 민·관 협의회를 구성, 수시 소통채널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대한상의(회장 최태원)와 함께 11월 23일(화)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중소기업 지원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보공유, ESG 지원사업 발굴·연계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발표와 더불어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시연,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등이 진행됐다.

❶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발표

국내·외 ESG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공급망 내에서 재생 원료 사용, 노동여건 등 ESG 참여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아직 ESG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규제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에 더해, 시장에서 사용되는 ESG 평가지표도 제각각**이라 중소기업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 ESG 인지여부 (중진공, '21.6) : 모른다 46.7%, 대충 알고 있다 41.3%, 잘 알고 있다 12%

** 전세계 600여개, 국내 30여개 → 목적 및 평가지표 간 항목·배점 등 상이

중기부가 ESG 간담회('21.7)와 중소기업 ESG 실태조사('21.6) 등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ESG 이해력 제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손에 잡히는 사례 제공 등 지원이 필요하

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만들었다. "규율"보다 "지원"에 초점을 두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ESG에 대한 인식개선을 중점 지원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 ① 중소기업 ESG 인식 제고, ②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성, ③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

< 중소기업 ESG 인식 제고 >

국내·외 주요 평가지표와 지난 8월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초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필수적이고 실천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 총 23개 지표 (환경 10개, 사회 7개, 지배구조 3개, ESG 전반 3개)

체크리스트는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최소수준의 지표이며, 자가진단용으로 활용된다. 중소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ESG 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진단을 완료하면 자사의 ESG 수준과 분야별 개선과제가 포함된 결과서가 자동으로 발급된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대면 스마트 자가진단 시스템 (K-doctor)

체크리스트는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것이며, 현재는 단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규모·업종·기업특성별(수출·고탄소 등)로 유형화하는 등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등 일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에 자가진단을 연동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ESG 인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사례 중심의 경영안내서 발간 등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ESG 인식 제고를 뒷받침한다.

<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해서는 대·중견기업 등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협력사에 대한 ESG 지원을 동반성장지수 가점에 반영*하는 등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ESG 지원에 적극 나서는 기업을 자상한기업으로 추가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협력사에 대한 지속가능경영(ESG, CSR 등) 지원실적 : 가점 0.5점

** 수위타격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수출지원사업 및 중견기업 R&D 참여 우대 등

글로벌 ESG 확산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출기업에는 ESG 관련 해외인증 획득시 가점부여, 수출국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전용 자금*, 탈탄소 R&D** 등을 지원하되, 탄소 부문의 중소기업 부담이 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 NET-Zero 자금 ('22. 정부안 1,200억원, 중진공), 신재생에너지보증 ('22. 정부안 5,000억



원, 기보) 등

**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22. 10개 과제), 탈탄소 기술개발지원 ('22. 20개사) 등 사회(S), 지배구조(G) 분야는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근로자 보호 및 복지지원 등 우수 사회적책임 실천기업에는 컨설팅, 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투명·윤리경영 지표를 일부 반영하여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

<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 >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는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관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거버넌스이다. 오늘 발족식을 계기로 향후 주기적인 업계 의견 청취 및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행사내용

행사에는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 보고, 진단 결과에 따른 부문별 개선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은 이론보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중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제작된 사례 중심의 “ESG 경영안내서” 도 현장에서 배포되었다.

이번 발족식에 참석한 지원기관, 중소기업 대표, 민간 ESG 평가기관 간 자유토론도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중소기업 ESG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해 5개 기관(중기중앙회, 대한상의, 한국생산성본부, 중진공, 기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중소기업의 ESG 인식과 대응 준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여 별도의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며,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